

	시설 및 기자재심의 위원회 규정	문서번호	5-1-7		
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개정일	2022. 02. 18.		
		페이지	1/2	관리 부서	사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시설 및 기자재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, 교무처장, 학생처장 산학협력처장, 사무처장, 구매담당 직원으로 구성한다. 단, 국고보조금으로 집행되는 건에 대해서는 산학협력처장은 제외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.

제3조(기능)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육시설, 복지시설, 실험, 실습 및 교육기자재 확보계획 수립 심의 및 성과평가
 2. 교육시설, 복지시설, 실험, 실습 및 교육기자재 유지, 관리, 개선에 관한 사항
 3. 공동실험기자재 및 기타 실험실습 기자재 선정과 관련한 주요사항의 심의
 4. 국고보조금의 배분과 집행계획 수립 심의
 5. 물적자원 확보와 유지에 관한 사항
- ② 전항의 경우 위원장은 필요시 구입 요청자에게 관련서류 제출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③ ①항의1 성과평가는 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 단,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제4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5조(결과보고)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교무위원회에서 보고할 수 있다.

제6조(임기)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기타) ① 운영세칙 등 본 규정의 개정이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국고보조금,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자체사업단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한다.

	시설 및 기자재심의 위원회 규정	문서번호		5-1-7	
		제정일		2010. 03. 01.	
		개정일		2022. 02. 18.	
			페이지	2/2	관리 부서 사무처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교명변경에 관련된 사항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교명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